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규정

- 제정 : 2018. 9. 1.
- 개정 : 2019. 6.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은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출제 수당, 감독 수당, 평가 수당, 준비·진행 수당, 전형안내 수당, 회의 수당 등의 비용이며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경비는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정한다.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지급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지급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홍보비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2항에 관한 교육부령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3-15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규정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